



옥천군

선 람	기관의 장



제1265호 2022. 6. 20.(월)

【예 규】

- 옥천군 예규 제42호 옥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1

【고 시】

- 옥천군 고시 제2022-43호 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37
- 옥천군 고시 제2022-4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39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고시 제2022-2호 2022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 고시 ..44

회 람									
--------	--	--	--	--	--	--	--	--	--

옥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이에 발령 한다.

2022년 6월 2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예규 제42호

옥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옥천군 소속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등)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 기피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군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별지 제
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
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
한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
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가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군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군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군수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군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군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군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군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군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군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

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 · 운영) ① 군수는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 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군수는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개발제한 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9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법」	제6조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	지구계획의 승인
4	공항시설 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6	국방·군사시설 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7	도시·군 관리 계 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8	기업 도시 개발 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9	마을 정비 구역 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10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11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2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1조의 3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3	혁신지구 재생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제46조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4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5	물류단지 개발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6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제28조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인가
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8	산업단지 개발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19	역세권개발 사업	「역세권의 및 이용에 법률」 개발 관한	제4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제13조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제27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1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2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23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24	로봇랜드 조성 사업	「지능형 로봇 개 발 및 보급 촉진 법」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제31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25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26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7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8	혁신도시 개발 사업	「혁신도시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11조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29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 1항 제2호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30	예비타당성 조사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별표 2]

법 위반 행위 관련 징계 양정 기준(제22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거나, 정도가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등 거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① 담당 업무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 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증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별·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기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종양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면,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① 관련 직무	직위(직급)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② 직무관련자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수 귀종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별·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현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신고·신청인		

	<p>[]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p>						
	<p>[]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p>						
조치대상	<table border="1"><tr><td>성명</td><td>소속</td><td>직위(직급)</td></tr><tr><td>① 관련 직무</td><td></td><td></td></tr></table>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卷之三

옥천군수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별·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현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대리자 지정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	---

신청 사유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별·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종양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별지 제6호 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보유자 []매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본인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주소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	--

부동산	유형 [] 토지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input type="checkbox"/> 지상권 <input type="checkbox"/> 전세권 <input type="checkbox"/> 분양권) [] 건물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input type="checkbox"/> 전세(임차)권 <input type="checkbox"/> 분양권)	취득(예정)일
	소재지	
	지번	지목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수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8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二〇一九年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자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면,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골프 [] 여행 [] 사행성 오락 [] 신고인 [] 퇴직공무원 [] 기타()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면,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p>[] 개인</p> <table border="1"> <tr> <td>성명</td> <td>연락처</td> <td>직업</td> </tr> </table> <p>[]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p> <table border="1"> <tr> <td>성명</td> <td>연락처</td> <td>직업</td> </tr> </table> <p>[]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p> <table border="1"> <tr> <td>성명</td> <td>연락처</td> <td>직업</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td> <td>대표자 성명</td> <td>소재지</td> </tr> </table>			성명	연락처	직업	성명	연락처	직업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성명	연락처	직업												
성명	연락처	직업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수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옥천군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종결사유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옥천군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일시	장소	
신고사항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전자우편 [] 전화 [] 방문 [] 기타()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가족 채용 제한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20.

옥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상위 서비스 거점이 농촌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

3. 사업비: 4,000백만원(국비 2,800, 군비 1,200)

4. 사업의 위치: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1, 2리 일원

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꿈자람 행복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선진지 견학, 홍보 · 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등

6. 사업시행자: 옥천군수(한국농어촌공사 옥천 · 영동지사 위탁시행)

7. 사업시행기간: 2021년 ~ 2024년(4년간)

8.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기능별)	전략사업	합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계		4,000,000	129,500	226,151	2,186,320	1,458,029	
기초생활 기반확충	꿈자람 행복센터 조성	3,115,000	—	—	1,869,000	1,246,000	
	소 계	3,115,000	—	—	1,869,000	1,246,000	
지역역량 강화	안내 꿈자람 프로젝트	43,120	—	8.624	17,248	17,248	
	안내 행복 프로젝트	112,904	—	11,880	43,868	57,156	
	운영주체 역량강화사업	50,512	—	8,954	16,313	25,245	
	마을경영지원	94,400	9,800	28,200	28,200	28,200	
	부대비용	584,064	119,700	168,493	211,691	84,180	
	소 계	885,000	129,500	226,151	317,320	212,029	

9. 사업의 효과: 소재지 문화·복지시설 및 생활환경정비를 통해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

10. 관계도서 열람 및 문의처: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730-3295)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043-730-2562)

옥천군 고시 제2022-4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옥 천 군 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용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합니다.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				
승인번호	2014-도시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등록번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1999-0090	
상호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자	조혁종	
영업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태왕빌딩(역삼동)				
대지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15-1 외36필지	건축면적(㎡)	28,247.30		
건축면적(㎡)	6,189.0800	건폐율(%)	21.91		
연면적(㎡)	83,258.3700	용적률(%)	223.34		
동수(주/부)	8동 /12동	세대수	545세대		
주택형별	아파트		총사업비	154,871,331천원	
착공예정일	2022년 6월		사용검사예정일	2024년 8월 31일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1	101동(아파트)	5,105.30	2	102동(아파트)	4,105.51
3	103동(아파트)	10,524.08	4	104동(아파트)	11,096.30
5	105동(아파트)	8,838.68	6	106동(아파트)	8,399.10
7	107동(아파트)	7,959.52	8	108동(아파트)	6,420.99
9	210동~221동(부대 복리시설)	2,630.57	10	222동(부대시설)	17,941.68
11	223동(복리시설)	236.64			
변경승인사항	사업주체 명칭 변경, 사업계획 변경(동배치, 건축면적, 연면적, 총수, 세대수 등)				

※ 기타 문의 사항은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730-356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옥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지구의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㉕	옥천 동안지구	주거형	옥천읍 동안리 15-1 번지 일원	32,017	감) 2,861.3	29,155.7	옥천군고시 제2015-7호 (2015.01.2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 적(m ²)	변경사유
변경	㉕	옥천 동안지구	29,155.7	- 옥천군고시 제2020-66호(2020.05.29.)로 군계획시설 (어린이공원 8)의 폐지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적합성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

②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32,017	감) 2,861.3	29,155.7	100.0	
택지(공동주택용지)	27,882	증) 365.3	28,247.3	96.9	군계획시설(도로)폐지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편입
기반 시설	소계	4,135	감) 3,226.6	908.4	3.1
	도로	1,882	감) 973.6	908.4	군계획시설(도로) 폐지 후 일부구간 도로 신설 / 기부체납
	공원	2,253	감) 2,253	0	군계획시설(공원)폐지/ 금회 구역 제척

2) 용도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017	감) 2,861.3	29,155.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2,017	감) 2,861.3	29,155.7	100.0	

■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면적 (m ²)	변경사유
제2종일반주거지역	29,155.7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 조정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	20	보조 간선 도로	2,243	중1-4 (매화리206-2)	중2-29 (죽향리 2-6)	일반 도로	중1-2	충북고시 제1999-41호 (1999.03.27.)	
변경	중로	1	3	20 (23)	보조 간선 도로	2,243	중1-4 (매화리206-2)	중2-29 (죽향리 2-6)	일반 도로	중1-2		
신설	소로	2	158	8	국지	74	중1-3 (동안리54-1)	동안리20-2	일반 도로	-		취락지 연계도로
폐지	소로	2	40	8	국지 도로	145	중로1-3 (동안리40-1)	중로1-3 (동안리223)	일반 도로	-	충북고시 제2000-17호 (2000.03.11)	
기정	소로	2	59	8	국지 도로	640	소2-61 (동안리21-2)	중1-3 (동안리92-6)	일반 도로	소2-63	충북고시 제2000-17호 (2000.03.11)	금회 지구단위 계획구 역에서 제척
변경	소로	2	59	8	국지 도로	501	소2-61 (동안리21-2)	중1-3 (동안리92-6)	일반 도로	소2-63	충북고시 제2000-17호 (2000.03.11)	
폐지	소로	2	60	8	국지 도로	643	중1-3 (동안리111-1)	중1-3 (동안리54-1)	일반 도로	소2-62	충북고시 제2000-17호 (2000.03.11)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3	중로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 20~23m, L = 2,24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진출입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가감속 차로 확보
-	소로2-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 8m, L = 7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취락지와 연결되는 도로 기능 유지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도로 신설
소로2-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 8m, L = 14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천군고시 제2020-66호(2020.05.29.)로 군계획시설(도로2-40) 폐지
소로2-59	소로2-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 8m, L = 50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선형 변경 고시사항 반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획
소로2-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 8m, L = 64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천군고시 제2020-66호(2020.05.29.)로 군계획시설(도로2-60) 폐지

나. 공원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⑧	동안 공원	어린이공원	옥천읍 동안리 산1-4 번지 일원	2,253	감 2,253	-	충북고시 제10호 (1985.02.05)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동안 공원	- 공원폐지 A=2,253m ² (감 2,253m ²)	-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폐지 (옥천군고시 제2020-66호(2020.05.29.))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m ²)	
㉕	-	27,882	증) 365.3	28,247.3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산2-3번지 일원	28,247.3	주거용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변경전 획지 면적	변경후 획지 면적	변경내용	변경사유
㉕	27,882m ²	28,247.3m ²	- 획지 면적 변경	-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계획시설 (도로) 폐지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로 편입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② 옥천읍 동안리 15-1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변경 전 : 15층 이하 • 변경 후 : 20층 이하	
		배 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 건물의 배치와 형태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형 태	• 공동주택단지 내 주동의 획일적인 형태를 탈피하여 탑상형과 판상형의 조화 로운 배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색을 지양하고 고명도·저채도의 색상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5m 지정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②	옥천읍 동안리 15-1번지 일원	• 높이 변경 15층 이하 → 20층 이하	• 통경축과 단지 쾌적성 확보를 위한 높이 변경 (군계획조례 개정 사항 반영)

2.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1/1,000)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1/1,200)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5. 관계도서를 옥천군청 도시교통과(043-730-3552)에 비치하고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고시 제2022 - 2호

2022년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 고시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신규급수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옥 천 군 수

(단위: 원)

구경별 (mm)	거 리 (m)	본관연결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직관부설	토 공	계량기 보호통	계량기	소 계	공과금 (수수료)	합 계	비 고
15	1	162,250	156,480	2,210	20,550	118,500	97,100	557,090	87,000	644,090	
20	1	180,680	191,160	3,660	20,550	155,900	114,600	666,550	129,000	795,550	
25	1	223,700	198,600	5,350	20,550	178,600	142,600	769,400	213,000	982,400	
32	1	280,440	206,400	8,760	20,550	247,700	174,500	938,350	321,000	1,259,350	
40	1	376,070	270,340	11,740	20,550	368,700	249,400	1,296,800	426,000	1,722,800	
50	1	502,780	293,920	17,230	20,550	416,600	319,800	1,570,880	846,000	2,416,880	
*참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0. 포장구간은 아래금액을 토공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콘크리트구간 : 69,330원/m - 아스콘구간 : 62,840원/m - 보.차도구간 : 9,410원/m0. 계량기 및 보호통은 구입단가로 하며 구입단가 변경 시 변경 적용한다.0.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기간은 3월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한다									